

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정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4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4월 24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, 야생 조수보호 증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 활동을 도모하고, 순환 수렵장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함.

4. 주요 골자

- 순환수렵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조수포획 승인 및 사용료 징수
 - 수렵 금지지역 지정
 - 수렵 방법과 총력 제한
 - 수렵 조수의 범위 및 포획 조수의 신고
 - 포획 승인등의 취소
 - 수렵 안내 및 조수보호원의 배치
 - 안전관리 및 수렵지도 단속등

5. 검토 의견

본 제정조례안은,

충청북도가 산림청의 승인을 얻어 수렵지역을 설정하여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경우,

수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 내용은,

조수 포획 승인 및 취소, 수렵 지도단속, 수렵 금지 구역 및 수렵 방법과 총력제한, 수렵 조수의 범위 및 포획 조수의 신고, 그리고 수렵안내등 순환수렵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입니다.

본 조례안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,

수렵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

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됩니다.

6. 참 부

○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정(안)